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

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모바일 신분증 제외) ※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) ※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(제출처 : 대리자면드미아)
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
	서약서	본인	· 당사 주택신청서에 비치(무주택자, 기존주택은 관련 서약서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) 등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· 당사 주택신청서에 비치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자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·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(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 내용)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 로 설정하여 발급
	복무확인서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
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·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(주택소유여부 확인용)
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	
청약 가점점수 선정기준표	본인	· 당사 주택신청서에 비치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/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'24.06.19.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어,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※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(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) ※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※출산예정일, 질병코드번호, 담당의명,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원이 날인된 원본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당사 주택신청서에 비치(임신중인 경우)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'24.06.19.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어,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
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	피부양 직계비속	·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) 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신료내역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) · 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 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신료내역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)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·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· <내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>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 로 설정하여 발급
		피부양 직계비속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<내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> - 30세 미만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 로 설정하여 발급
해외근무자(단신부임)	해외체류 입증 서류	본인	·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·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재직증명서 ·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허가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(근로 및 피견목적 제외)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·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 으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·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 로 설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	위임장	청약자	·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위임장(당시주택신청서 비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· 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※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(제출처 : 대리자면드미아)
	대리인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부적격시	부적격 소명 자료	본인 및 세대원	· 등기이행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호산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· "소형· 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임이 명시된 공적 서류 · 기타 부적격 소명 서류